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15(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5.

라. 상정일자 : 2009. 12. 1.(제178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 지원과 지역주민에게 타시도와 동일한 채권면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소급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친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2009. 10. 1. ~ 2012. 12. 31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면제항목 신설(안 별표 2 제2호자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은

- 정부(지식경제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지역개발채권을 구입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편, 조례의 부칙 중 개정규정은 2009. 10. 1부터 적용한다. 라고 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감면 표준조례(안)을 인용 조례 입법예고일을 소급적용한 사항임.
-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별표2에 의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채권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 되는 바 면제기준에 있어서 채권종류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이근학 의원

- 7~9월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 자는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은 없는지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감면 범위가 상이함

< 답 변 >

○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50만원으로 정해진 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윤지상, 지정구,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9. 10. 1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등록 다.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2년12월31까지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	“자”목에 대하여는 2012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 ---------- ----------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인천광역시-(이하“시”라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생략) 1. ~ 4. (생략) 5.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제4호--------